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78

발의연월일: 2020. 8. 20.

발 의 자:이원욱 · 전용기 · 김철민

김민기 · 장경태 · 조승래

허 영・김병욱・홍성국

윤후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치료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처벌 규정만 두고 있고, 치료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점과 해당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하다 보니 긴급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정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과 방역 업무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긴급상황시에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 공동체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엄벌하고, 방역 당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자 함(안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60조에 따른 방역관의 업무와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위계, 위력으로 방해한 자
- 제7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41조 및 제42조의 조치를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교통 등을 이용한 자
- 제79조에 제6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 6. 이 법에 따른 방역당국의 활동과 감염병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7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60조에 따른 방역관의 업
	무와 제62조의2에 따른 역학
	조사관의 업무를 위계, 위력
	으로 방해한 자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8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1조 및 제42조의 조치를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
	하는 시설, 교통 등을 이용한
	<u>자</u>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9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u>.</u>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6.이 법에 따른 방역당국의 활동과 감염병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